

Q1. 단태아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90일이 부여되는데, 사용기준에 산후 연속 45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. 이 기준을 꼭 준수해야 하나요?

A. 해당 기준은 임산부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사항(근로기준법 제74조)으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. (다태아는 출산전후휴가 120일 중 산후 연속 60일 이상 사용 必)

Q2.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있나요?

A. 배우자 출산휴가로 총 10일(Working day 기준)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,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.

Q3. 가족돌봄휴가는 개인연차와 별개로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?

A. 네, 가족돌봄휴가(무급)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기간(120일) 중 10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인연차와 무관하게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 및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Q4. 올해 결혼 예정입니다. 결혼 청원휴가는 결혼 당일부터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아는데, 코로나19 관련 연장이 가능한가요?

A. 네, 본인 결혼 및 안식년휴가 기한 도래('20.2~12월) 직원에 대한 청원/안식년휴가 사용 기한이 2020년말까지 연장되었으니,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Q5. 수술로 입원병가를 내려고 하는데, 필요한 증빙서류가 무엇인가요?

A. 입원병가 시 진단서, 입·퇴원확인서, 치료확인서 또는 진료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(모바일 Kate > 마비서로 병가 복무처리 가능)

※ 일반병가 증빙서류: 진단서, 치료확인서 또는 진료영수증